

이슈&리포트

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회사 및 근로자 지원제도 요약

2020년 3월 27일



이런 이유로 이슈&리포트 만들었습니다



최근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사용을 강제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.
무급휴가 등 사용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하고 있지만, 인건비
절감을 위한 대안을 알려 줄 필요가 있어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활용할 수 있는
제도만 요약했습니다.

이번 <이슈&리포트>는 최숙희 노무사(노무법인 유앤)가 제공해주셨습니다.

구분	지원대상 및 요건	지원금액 및 기간	비고
재택근무제 간접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•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• 지문인식,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이 원칙이나,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재택근무에 대해 이메일, 모바일메신저로 근태관리내역 증빙가능 • 근로장소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근로계약서에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액 ①주3회 이상 활용시 1주당 10만원 ②주1~2회 활용시 1주당 5만원 * 재택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• 지원기간: 최대 1년간(52주) 지원 • 지원한도: 피보험자수의30%(최대70명) 	<출처>2020.2.26.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“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.”
시차근무제 간접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•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• 통상 출퇴근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시업 및 종업시각 변경(1일 소정근로 8시간) • 지문인식,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 • 취업규칙에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 규정 •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액 ①주3회 이상 활용시 1주당 10만원 ②주1~2회 활용시 1주당 5만원 * 시차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• 지원기간: 최대 1년간(52주) 지원 • 지원한도: 피보험자수의30%(최대50명) 	<출처>2020.2.26.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“코로나19 예방 위해 유연근무제 지원절차 간소화한다.”
가족돌봄휴가 코로나19 긴급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 중 확진자, 의사환자, 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 •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액 ①1인당 일5만원, 최대5일(부부합산 최대50만원) ②한부모 가정 최대10일, 최대50만원 시차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일은 지원 제외 • 지원기간: 2020.1.20.부터 코로나19종료시까지 • 지원제외: 회사에서 유급가족돌봄휴가를 받은 경우 	<출처> 2020.2.28.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“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에게 일 5만원, 최대 5일 지원” 등

구분	지원대상 및 요건	지원금액 및 기간	비고
<p>위라벨 일자리 장려금 (근로시간단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족돌봄, 본인건강, 은퇴준비,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고, 이를 사업주가 허용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의 주1시간 이상 단축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※ 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2주 미만 전환도 지원, 지원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 요건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 근로시간단축 관리규정 제출 지문인식,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근태자료 제출 월 20시간 이내의 연장근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임금감소액 보전금* *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하여 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※ 코로나19관련 3.1~6.30까지 한시적으로 임금감소액 상향 ① 주15~25시간 근무 : 월 최대 60만원(중전 40만원) ② 주26~35시간 근무 : 월 최대40만원(중전 24만원) ③ 주 35시간 이하 단축 근무하는 임신근로자: 월 최대 60만원(중전 40만원) - 간접노무비 :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, 중견기업 월40만원(중전 20만원) • 대체인력인건비 : 우선지원 대상기업 월60만원(코로나19관련 월80만원), 대기업 월30만원 • 지원기간: 최대 1년간 지원 	<p><출처> 2020.3.25.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"코로나 19 대응, 자녀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장려금 활용하세요!"</p>
<p>고용유지 지원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사업주 - 재고량 50%증가, 생산량 또는 매출액 15% 감소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- 코로나 피해업종은 재고량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지원 • 정부가 특별지원업종으로 지정한 경우 추가지원 -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운송업, 공연업 등 4개 업종 • 휴업(완전휴업 또는 전체 근로시간의 20% 초과 휴업) 또는 휴직(1개월 이상)을 실시할 것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금액 및 기간: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일부지원(코로나19관련 한시적으로 지원금 상향) - 2.1부터 3.31 까지 : 중소기업 2/3 → 3/4, 대기업 1/2 → 2/3~3/4 - 4.1부터 6.30까지 : 중소기업 90%, 대기업 2/3~3/4 * 특별고용지원업종(3.16.~9.15.) 90% (1일7만원, 연 최대 180일) • 지원한도: 1일6.6만원, 연 최대180일 	<p><출처> 2020.3.25. 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"사상 최초,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 지원금 최대 90% 지원"</p>

상기 지원제도 외에도 경제위기에 직면한 기업은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을 전제로 임신기 근로시간단축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단축,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,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의 법정 휴직 및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코로나19 종료시까지 적극적으로 승인 또는 활용하는 정책을 통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.ei.go.kr, www.worklife.kr(워라벨 일자리 장려금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코로나19 대응 정책에 따라 수시로 요건 또는 지원금액 관련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HR의 성장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응원합니다

주 소 | 서울시 중구 다산로 11길 19, 백석빌딩 신관, 중앙경제
전 화 | 02-2231-7293
사 이 트 | www.elabor.co.kr